

의안번호	2215701
의 퇴 인	이언주 의원
회 답 일	2026.01.22.
추계번호	25E747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- －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및 납입액 세액공제,
국내집합투자기구 과세특례 및 납입액 소득공제 신설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																
1	안 제91조의26(국내 투자형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에 대한 과세 특례) 신설	○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하고,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·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·분리과세 적용 <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신설안의 주요 내용> <table> <tr> <th>구분</th> <th>내용</th> </tr> <tr> <td>가입 대상</td> <td>19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으로 직전 과세기간 근로소득이 있는 자</td> </tr> <tr> <td>세율</td> <td> - 이자·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- 비과세 한도 초과 시 5% 분리과세 </td> </tr> <tr> <td>비과세 한도</td> <td> -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, 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원 이하인 거주자·농어민: 400만원 - 그 외: 200만원 </td> </tr> <tr> <td>손익 통산</td> <td>이자·배당소득에서 손실 차감</td> </tr> <tr> <td>계좌 요건</td> <td> - 1인 1계좌 - 투자중개업자·투자일임업자·신탁업자와 계약을 체결해 개설 - 운용 재산: ①집합투자기구(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% 이상을 주권상장법인에 투자하는 경우)의 집합투자증권, ②주권상장법인의 주식, ③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</td> </tr> <tr> <td>계약 기간</td> <td>3년 이상</td> </tr> <tr> <td>납입 한도</td> <td> - 총 3억원(단, 재형저축,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,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액을 뺀 금액) - 연간 납입한도: 3천만원(전년도의 한도 미달성분을 차년도에 납입 가능) </td> </tr> </table>	구분	내용	가입 대상	19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으로 직전 과세기간 근로소득이 있는 자	세율	- 이자·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- 비과세 한도 초과 시 5% 분리과세	비과세 한도	-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, 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원 이하인 거주자·농어민: 400만원 - 그 외: 200만원	손익 통산	이자·배당소득에서 손실 차감	계좌 요건	- 1인 1계좌 - 투자중개업자·투자일임업자·신탁업자와 계약을 체결해 개설 - 운용 재산: ①집합투자기구(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% 이상을 주권상장법인에 투자하는 경우)의 집합투자증권, ②주권상장법인의 주식, ③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	계약 기간	3년 이상	납입 한도	- 총 3억원(단, 재형저축,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,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액을 뺀 금액) - 연간 납입한도: 3천만원(전년도의 한도 미달성분을 차년도에 납입 가능)	-
구분	내용																		
가입 대상	19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으로 직전 과세기간 근로소득이 있는 자																		
세율	- 이자·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- 비과세 한도 초과 시 5% 분리과세																		
비과세 한도	-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, 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원 이하인 거주자·농어민: 400만원 - 그 외: 200만원																		
손익 통산	이자·배당소득에서 손실 차감																		
계좌 요건	- 1인 1계좌 - 투자중개업자·투자일임업자·신탁업자와 계약을 체결해 개설 - 운용 재산: ①집합투자기구(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% 이상을 주권상장법인에 투자하는 경우)의 집합투자증권, ②주권상장법인의 주식, ③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																		
계약 기간	3년 이상																		
납입 한도	- 총 3억원(단, 재형저축,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,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액을 뺀 금액) - 연간 납입한도: 3천만원(전년도의 한도 미달성분을 차년도에 납입 가능)																		
2	안 제91조의27(국내 투자형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에 대한 세액 공제) 신설	○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액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	-																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								
3	안 제91조의28(국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증권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) 신설	○ 국내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－ (소득공제 대상) 국내집합투자기구(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% 이상을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)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금액 * 투자 한도: 인당 3억원 * 투자 기한: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 － (소득공제액) 국내집합투자기구 투자액에 공제율 반영 * 공제액 한도: 당해 종합소득금액의 50% <국내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투자액에 대한 공제율> <table> <tr> <th>투자금액</th> <th>공제율</th> </tr> <tr> <td>3천만원 이하</td> <td>총 금액의 30%</td> </tr> <tr> <td>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</td> <td>900만원+3천만원 초과액의 20%</td> </tr> <tr> <td>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</td> <td>1,300만원+5천만원 초과액의 10%</td> </tr> </table>	투자금액	공제율	3천만원 이하	총 금액의 30%	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	900만원+3천만원 초과액의 20%	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	1,300만원+5천만원 초과액의 10%	—
투자금액	공제율										
3천만원 이하	총 금액의 30%										
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	900만원+3천만원 초과액의 20%										
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	1,300만원+5천만원 초과액의 10%										
4	안 제91조의29(국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증권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) 신설	○ 국내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9% 세율로 분리과세 － (대상) 안 제91조의28에 따라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경우로, 투자일부터 3년 이내 발생한 배당소득으로 한정	—								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91조의26(국내투자 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에 대한 과세특례) 신설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2	안 제91조의27(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세액공제) 신설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3	안 제91조의28(국내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) 신설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4	안 제91조의29(국내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) 신설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및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, 국내집합투자기구 과세특례 및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함에 따라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
 -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*에서 발생하는 이자·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(한도 초과 시 5% 분리과세)를 적용함에 따라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(안 제91조의26 신설)
 - ※ 국내 상장주식에 60%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, 국내 상장주식 등의 자산을 운용
 -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액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에 따라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(안 제91조의27 신설)
 - 국내집합투자기구*에 2029년 말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일정비율(투자금액별 10~30%)을 반영한 금액만큼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따라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(안 제91조의28 신설)
 - ※ 국내 상장주식에 60%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
 - 국내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 후 3년 이내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9% 분리과세를 적용함에 따라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(안 제91조의29 신설)

- 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통계 등의 자료가 별도로 집계되지 않고 있어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
-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비과세·분리과세 적용 시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가입 인원 및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1인당 소득금액(총급여액/종합소득금액 규모별), 현행 소득세율(분리과세/종합과세)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나, 관련 정보의 부재로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어려움
 -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가입 인원 및 1인당 납입액 규모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나, 관련 정보의 부재로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어려움
 - 국내집합투자기구 투자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가입 인원 및 1인당 투자액(투자액 규모별), 공제 한도 설정을 위한 1인당 종합소득금액 규모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, 관련 정보의 부재로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어려움
 - 국내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분리과세 적용 시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가입 인원 및 1인당 소득금액, 현행 소득세율(분리과세/종합과세)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, 관련 정보의 부재로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어려움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김효경	박연서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효경	02-6788-4647	hkkim@assembly.go.kr